

발행인 : 용산구청장  
 편집인 : 홍보담당관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 용산구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1702호**    2014. 10. 24.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조    례	
조례 제2014-1060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3
조례 제2014-1061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고    시	
공고 제2014-115호 :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12
◎ 공    고	
공고 제2014-755호 : 건축허가 취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39
공고 제2014-757호 : 공시송달공고	41
공고 제2014-759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안 전부개정 입법예고	45
공고 제2014-764호 : 공시송달공고	56
◎ 인    사	
발령 제2014-101호 : 인사발령(육아휴직) 사항 통보	57
발령 제2014-102호 : 인사발령(근속승진) 사항 통보	58
발령 제2014-103호 : 인사발령(보직변경) 사항 통보	59
발령 제2014-104호 : 인사발령(복직) 사항 통보	6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용산구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용산소개→구청소식→용산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199-6700 / 전송 : (02)2199-5510
- 구보발행일은 매주 금요일(필요시 수시 발행)이며,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

D-3 접수 → 
 D-2 편집·교정 → 
 D-1 인쇄·제책 → 
 D 보급·배부

※ 문서시행일은 구보발행일자가 아닌 문서별 게재일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보 판										



**조 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2014 - 1060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용산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용산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심의 및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품위 손상 또는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共有) 촉진을 통한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용산구 공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은 용산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며, 민간자원 공유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 (제3조)
- 나.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을 해야 함 (제5조)
- 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7조)
- 라.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용산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제8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2014 - 1061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내용 중 “만 85세 이상” 을 “만 100세 이상” 으로 하고, “장수수당” 을 “장수축하금”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내용) ① (생략)</p> <p>② 제2조제4호의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만 <b>85세 이상</b>인 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b>장수수당</b>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3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2조제4호의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만 <b>100세 이상</b>인 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b>장수축하금</b>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현행 만 85세 이상 지급되는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중복성이 있으며, 또한 기초연금의 확대로 장수수당을 장수축하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른 “만 85세 이상” 인자를 “만 100세 이상” 으로 하며, “장수수당” 을 “장수축하금” 으로 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4 - 115호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8호(2006.10.2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2-5호(2012.01.20.) 및 제2014-14호(2014.02.12.)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4-76호(2014.07.0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용산구 효창동 117-1번지 일대 효창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주택재개발사업  
2) 명칭 -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1)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17-1번지 일대  
2) 면적 - 10,030㎡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법인명칭 -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276, 301(효창동,강산빌딩3층)  
3) 대표자성명 및 주소 - 오중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59길 11-13)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0개월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12. 01. 1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 : 붙임 참조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용 도
변경 전	8,517.00	22.87	234.84	52.30	공동주택(3개동 18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후	8,517.00	25.80	234.03	52.22	공동주택(3개동 1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변경)

1) 변경 전

공급 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 기준)						
				59.62 (59A형)	59.76 (59B형)	59.95 (59C형)	59.88 (59D형)	84.77 (84A형)	84.75 (84B형)	114.40 (114형)
계		3	187	23	17	15	16	64	18	34
분양	아파트	3	187	23	17	15	16	64	18	34
임대	-	-	-	-	-	-	-	-	-	-

1) 변경 후

공급 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 기준)					
				59.97 (59A형)	59.97 (59A-1형)	59.98 (59B형)	59.95 (59C형)	84.91 (84A형)	84.92 (84B형)
계		3	199	32	16	17	16	100	18
분양	아파트	3	199	32	16	17	16	100	18
임대	-	-	-	-	-	-	-	-	-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생략 (변경없음)

차. 사업 변경사유 및 내용

- 1) 사업 변경사유 : 중 · 소형 평형(84형,59형)으로 주택규모계획 및 규모별 단위세대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 변경
- 2) 변경내용 : 위 변경 내용과 같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03.11)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아 수	층수 (지하/ 지상)	연 면 적(㎡)		소 유 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53	11,179.00	10,030.00	10,030.00							95		9,297.93	9,297.93								
수용	1	89		대	89.60	89.60	89.6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박선순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89	주택	연와조	1	1/2	106.49	106.49	박선순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89	가압류	정호식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72 세양청마루아파트 103-802			
																				근저당	효창새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6			
																				근저당	효창새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6			
																				근저당	효창새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6			
		89	-	2	도	6.70	6.70	6.70	도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박선순							박선순							
		89	-	3	도	2.90	2.90	2.90	도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박선순							박선순							
수용	2	90		대	128.90	128.90	128.9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박상민	서울 용산구 효창동 90 6/2	근생 및 다가구	연와조	1	1/2	217.48	217.48	박상민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90 6/2	근저당	중소 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50 (방산지점)			
																				근저당	중소 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 (청계5가지점)			
수용	3	91		대	76.00	76.00	76.0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김정순	서울 용산구 효창동 91	주택	목조	1	1	66.12	66.12	김정순	서울 용산구 효창동 91						
수용	4	92	-	2	대	32.10	32.10	32.1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영호	서울 용산구 효창동 92-3	주택	목조	1	1	42.74	42.74	이영호	서울 용산구 효창동 92-3					내재 건물
수용	5	92	-	3	대	33.70	33.70	16.85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김은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623303호	주택	목조	1	1	42.74	21.37	김은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623303호					내재 건물
							16.85			권순걸	서울 용산구 효창동 5-623303호							권순걸	서울 용산구 효창동 5-623303호						

구분	연 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층 수	층수 (지하/ 지상)	연 면 적(㎡)			소 유 자		권리종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6	93		대	102.50	102.50	102.50	대	제2층 일반 주거지역	이성자	서울 용산구 효창동 93	주택	연와조	1	1/2	99.28	99.28	이성자	서울 용산구 효창동 93						
수용	7	94		대	46.30	46.30	46.30	대	제2층 일반 주거지역	김재숙	서울 용산구 효창동 94	주택	연와조	1	1/2	72.07	72.07	김재숙	서울 용산구 효창동 94	근저당	효창새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32			
수용	8	97	- 1	주	355.60	355.60	355.60	주	제2층 일반 주거지역	㈜영동 석유	서울 용산구 효창동 97-1	주택(주택지소)	연와조	1	1/2	199.81	199.81	㈜영동 석유	서울 용산구 효창동 97-1	근저당	효창새마을금고	충남 서산시 대신읍 대죽리 640-6			
																			근저당	효창새마을금고	충남 서산시 대신읍 대죽리 640-6				
수용	9	102		대	64.00	64.00	64.00	대	제2층 일반 주거지역	김정봉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2	근생	목조	1	2	56.86	56.86	김정봉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2	근저당	효창새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32			
																			근저당	효창새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32				
수용	10	103	- 1	대	76.00	76.00	76.00	대	제2층 일반 주거지역	이기석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77-1 반도유보라아파트 102-1103호	주택	목조	1	1	42.98	42.98	이기석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77-1 반도유보라아파트 102-1103호						
수용	11	103	- 2	대	49.60	49.60	49.60	대	제2층 일반 주거지역	김학균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2	주택	목조	1	1	42.98	42.98	김학균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2						
수용	12	104		대	281.00	281.00	152.21	대	제2층 일반 주거지역	안민자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4	주택	철근콘크리트연와조	1	1/2	175.17	94.88	안민자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4	근저당	오순남	서울 도봉구 수유동 58-59			
							128.79			최국주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4 2층					80.29		최국주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4 2층	압류	고양 세무서				
수용	13	105	- 1	대	76.00	76.00	76.00	대	제2층 일반 주거지역	김정훈	서울 마포구 삼성래미안(차) 410-304호	주택	세벽콘크리트목조	1	1	28.43	28.43	김정훈	서울 마포구 삼성래미안(차) 410-304호						내재 건물
수용	14	105	- 2	대	89.20	89.20	89.20	대	제2층 일반 주거지역	정문희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2-8 한국전자시험연구원	다가구	연와조	1	4	159.71	159.71	정문희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2-8 한국전자시험연구원	전세권	전경훈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5-2 2층	특정건물에 의한 연면적 변경		
수용	15	106	- 1	대	40.70	40.70	40.70	대	제2층 일반 주거지역	권정걸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6-1	주택	목조	1	2	61.16	61.16	권정걸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6-1						

구분	연 번	권리의 소재지		지목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면 적(m <sup>2</sup> )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동 수	층수 (지 하/ 지상)	연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권리의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07		대	13.20	13.20	6.0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권정걸													
수용	16	108	- 2	대	32.10	32.10	32.1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김인춘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6-2	주택	목조	1	2	41.32	41.32	김인춘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6-2				
		107					7.20			김인춘								김인춘					
수용	17	108		대	178.50	178.50	178.5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김용한	전북 정읍시 상동 146-1 3차현대@301-1710	주택	연외조 세멘부 록조	1	2	105.72	105.72	김용한	전북 정읍시 상동 146-1 3차현대@301-1710				
수용	18	109		대	92.60	92.60	92.6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김애선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9	주택	목조	1	1	46.28	46.28	김애선	서울 용산구 효창동 109	근저당	청파동새 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21-9	
																			근저당	현대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21-9		
수용	19	110		대	290.90	290.90	96.97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홍대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110-2103호	주택	목조	1	2	123.50	41.17	홍대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110-2103호				
		110					96.97			홍목화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5-1 선경A5-202					41.17	41.17	홍목화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5-1 선경A5-202				
		110					96.96			우동협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율리1282 신촌마포스홀타운단지 209-601					41.17	41.17	우동협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율리1282 신촌마포스홀타운단지 209-601				
수용	20	111		대	69.40	69.40	69.4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김어진 가라뎌	서울 동작구 본동 484번지 경동메르빌A 106동 806호	주택	목조	1	1	19.01	19.01	김어진 가라뎌	서울 동작구 본동 484번지 경동메르빌A 106동 806호	근저당	남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가락동지점)	
																			근저당	남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길동지점)		
												주택	목조	1	1	19.01	19.01	김어진 가라뎌	서울 동작구 본동 484번지 경동메르빌A 106동 806호				
수용	21	112		대	185.10	185.10	185.1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박인화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2	다가구	철근콘크리트외벽 구조	1	1/3	333.69	333.69	박인화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2	압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분	연 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동 수	층수 (지하/지상)	연 면 적(㎡)		소 유 자			권리유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압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근저당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한남1동지점)					
																		근저당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한남1동지점)					
수용	22	113	-	1	대	165.30	165.30	33.06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나병철	서울 광진구 구의동257-64	주택	목조	1	1	56.20	56.20	박인화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2					
								33.06			나용	서울 광진구 자양로 178-20 301호													
								33.06			나병영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0 길 48-6													
								33.06			오상숙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동 67, 111동 403호													
								33.06			나인자	289 hampshire drive plains boro NJ 08536													
수용	25	113	-	2	대	46.30	46.30	46.30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나인자	289 hampshire drive plains boro NJ 08536	근생	목조	1	1	34.71	34.71	나인자	289 hampshire drive plains boro NJ 08536					
수용	26	114			대	119.00	119.00	119.00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홍기수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4 2층	다가구	연외조	1	1/2	186.45	186.45	홍기수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4 2층	압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용	27	115			대	82.60	82.60	82.60	대		유인덕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5	주택	조적조	1	1/2	125.80	125.80			근저당	효창새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6		

구분	연 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m <sup>2</sup> )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동 수	층수 (지하/ 지상)	연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권리의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26	116			대	46.30	46.30	46.3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김춘희	서울 용산구 문배동 40-19 삼나마이너스빌 902호	주택	목조	1	1	17.52	17.52	김춘희	서울 용산구 문배동 40-19 삼나마이너스빌 902호					
수용	27	117	-	1	대	112.40	112.40	112.4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성경남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7-1	다가구	조적조	1	1/2	149.16	149.16	성경남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7-1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면 적(㎡)			이용상형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층수 (지하/ 지상)	연 면 적(㎡)		소 유 자			권리의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28	117	-	2	대	62.80	62.80	23.14	대		노봉환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7-2	다가구	조적조	1	1/2	84.59	28.22	노봉환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7-2					
		117	-	2				39.66			임순덕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7-2					56.37		임순덕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7-2					
수용	29	117	-	3	대	62.80	62.80	31.40	대		홍승표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1 동아그리아 106-1801	주택	목조	1	1	26.45	13.23	홍승표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1 동아그리아 106-1801					
		117	-	3				31.40			박성혜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1 동아그리아 106-1801					13.22		박성혜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1 동아그리아 106-1801	근저당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수용	30	118	-	1	대	72.40	72.40	72.40	대		임남종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8-2	근생 및 다가구	철근콘크리트외장	1	1/3	232.63	134.93	임남종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8-2					118-2양 지상
수용	31	118	-	2	대	53.20	53.20	53.20	대		권혁분	경기광주시태전동 성원1동 402호							권혁분	경기광주시태전동 성원1동 402호					
		118	-	1							권혁분						97.70		권혁분					118-1양 지상	
수용	32	119			대	181.80	181.80	90.90	대		김수홍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9	다가구	철근콘크리트외장	1	1/3	348.33	174.17	김수홍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9					
		119						90.90			한경덕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9						174.16		한경덕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9				
수용	33	120			대	128.90	128.90	42.36	대		최의환	경기 파주시문산읍 문산리 17-360 한진아파트 1-103	다세대	철근콘크리트	1	5	237.41	78.02	최의환	경기 파주시문산읍 문산리 17-360 한진아파트 1-103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부평지점)		
수용	34	120						35.79			김진배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4-87 용산구청 5층 문화체육과						65.91		김진배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4-87 용산구청 5층 문화체육과				
수용	35	120						29.21			하은숙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48-16 6층						53.81		하은숙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48-16 6층	근저당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구분	연 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			이 용 상 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동 수	층수 (지 하/ 지 상)		연 면 적(㎡)		소 유 자		권리유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47	139	-	2	대	120.70	120.70	120.7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오광호	서울 용산구 효창동 139-2	주택	연와조	1	1/2	164.10	164.10	오광호	서울 용산구 효창동 139-2					
수용	48	140	-	2	대	79.30	79.30	79.3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기형	서울 용산구 문동 38번지 13호 401호	다가구	철근콘크리트 구조	1	1/3	165.10	165.10	이기형	서울 용산구 문동 38번지 호 401호					
수용	49	140	-	3	대	162.00	162.00	162.0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김명규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0-3	다가구	철근콘크리트 구조	1	1/3	289.51	289.51	김명규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0-3					
수용	50	141			대	46.30	46.30	46.3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오홍석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47	주택	목조	1	1	18.48	18.4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47			신발생 무허가 존재		
		141									오홍석		주택	목조	1	1	3.31	3.31	오홍석		근저당	(주)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중로5가지점)		
수용	51	142			대	79.30	79.30	79.3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서동수	서울 용산구 원동 23번지 202-912	주택	목조	1	2	58.52	58.52	서동수	서울 용산구 원동 23번지 202-912					
		142	-	1	대	27.80	27.80	27.8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서동수								서동수						
수용	52	142	-	2	대	79.30	79.30	79.3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정하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359	주택	목조	1	2	61.05	61.05	정하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359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잠실엘스지점)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잠실엘스지점)			
수용	53	143			대	89.20	89.20	89.2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구정완	서울 양천구 목5동 4단지아파트 408-703호	주택	목조	1	1	29.75	29.75	구정완	서울 양천구 목5동 4단지아파트 408-703호	근저당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여의도중앙지점)		
수용	54	144	-	1	대	63.80	63.80	63.8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고은영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료관리 이명숙남 앞	주택	목조	1	2	63.71	63.71	고은영	서울 용산구 효창동 5-76 우리명 앞					
수용	55	146	-	1	대	77.40	77.40	77.4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배기창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6-1	주택	목조	1	1	46.55	46.55	배기창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6-1	근저당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효창동지점)		

구분	연 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m <sup>2</sup> )			이 용 상 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동 수	층수 (지하/ 지상)	연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권리의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저당	(주)국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효창동지점)					
수용	56	146	-	2	대	127.90	127.90	127.9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홍영화	서울 용산구 이촌동 430 엘리한강 자이아파트 110-2103	주택	목조	1	1	62.15	62.15	홍영화	서울 용산구 이촌동 430 엘리한강 자이아파트 110-2103					
수용	57	146	-	3	대	52.20	52.20	52.2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정희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6-3	주택	연외조	1	1/2	55.90	55.90	이정희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6-3	근저당	효창새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6		
수용	58	146	-	5	대	62.10	62.10	62.1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왕상균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6-5	다가구	연외조	1	1/2	118.32	118.32	왕상균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6-5					
수용	59	146	-	6	대	68.40	68.40	68.4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오충근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6-6	다가구	연외조	1	1/2	112.85	112.85	오충근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6-6	근저당	효창새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6		
수용	60	146	-	7	대	85.00	85.00	85.0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순자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6-7	다가구	연외조	1	1/3	159.96	159.96	이순자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6-7					
수용	61	146	-	8	대	81.60	81.60	81.6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원재연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6-8 1층 (권덕향)	다가구	연외조	1	1/2	124.02	124.02	원재연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6-8 1층 (권덕향)					
수용	62	146	-	9	대	101.20	101.20	101.2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김일순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6-9	주택	연외조	1	1/3	195.20	195.20	김일순	서울 용산구 효창동 146-9	근저당	(주)우리 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서여의도지점)		
수용	63	147	-	1	대	59.50	59.50	59.5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장만능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80 상용@101-1206	주택	목조	1	2	64.47	64.47	장만능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80 상용@101-1206					
수용	64	148	-	2	대	56.20	56.20	56.2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홍민정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598 신도1차 404-1102호	주택	목조	1	2	59.50	59.50	홍민정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598 신도1차 404-1102호	근저당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1		
수용	65	148	-	1	대	44.30	44.30	44.3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남궁맹선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88-6덕음빌라 라-201		철근콘크리트 조	1	1/1	44.18	44.18	남궁맹선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88-6덕음빌라 라-201				양지상 148-2	
			-	2		2.00	2.00	2.00			남궁맹선														

구분	연 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동 수	층수 (지하/ 지상)	연 면 적(㎡)			소 유 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66	149	-	1	대	105.10	105.10	14.39	대	제2종 일 반주거지역	고향순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565 우성(아) 8-301호	다세대	철근콘 크리트 조	1	1/4	899.02	123.08	고향순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565 우성(아) 8-301호	근저당	중앙농업 협동조합	서울 광진구 자양동 635-8(건대역지점)					
							78.70	78.70	10.77	대	제2종 일 반주거지역	고향순										고향순		근저당	㈜석수와 퓨리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14		
							1.40	1.40	0.19	대	제2종 일 반주거지역	고향순											고향순					
							82.00	82.00	11.23	대	제2종 일 반주거지역	고향순												고향순				
							87.60	87.60	11.99	대	제2종 일 반주거지역	고향순												고향순				
							150	-	4	대	16.80	16.80	2.30	대	제2종 일 반주거지역	고향순								고향순				
수용	67	149	-	1			14.19			김용담	서울 용산구 효창동150-1 아이리스빌 102호						121.38	김용담	서울 용산구 효창동150-1 아이리스빌 102호									
							10.62			김용담										김용담								
							0.19			김용담											김용담							
							11.07			김용담												김용담						
							11.83			김용담													김용담					
							150	-	4			2.27		김용담									김용담					
수용	68	149	-	1			7.19			이상호	서울 용산구 효창동150-1 아이리스빌 101호						61.54	이상호	서울 용산구 효창동150-1 아이리스빌 101호									
							5.39			이상호										이상호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m <sup>2</sup> )			이 의 상 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동 수	층수 (지하/ 지상)	연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권리의 종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9	-	4																					
		150	-	1																					
		150	-	2																					
		150	-	4																					
		149	-	1									61.54												
		149	-	2																					
		149	-	4																					
		150	-	1																					
		150	-	2																					
		150	-	4																					
수용	71	149	-	1									121.38												
		149	-	2																					
		149	-	4																					
		150	-	1																					
		150	-	2																					
		150	-	4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	구조	층수 (지하/ 지상)	연면적(㎡)		소유자			권리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체	소유자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149	-	1				7.19			최무열	서울 용산구 효창동 150-1 아이리스빌 301					61.54		최무열	서울 용산구 효창동 150-1 아이리스빌 301					
	149	-	2				5.40			최무열								최무열						
	149	-	4				0.09			최무열								최무열						
	150	-	1				5.61			최무열								최무열						
	150	-	2				5.99			최무열								최무열						
	150	-	4				1.15			최무열								최무열						
	149	-	1				7.19			김수미	서울 용산구 효창동 150-1 아이리스빌 301					61.54		김수미	서울 용산구 효창동 150-1 아이리스빌 301	근저당	주신한은 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숙명여자대학교 지점)		
	149	-	2				5.39			김수미								김수미						
	149	-	4				0.10			김수미								김수미						
	150	-	1				5.61			김수미								김수미						
	150	-	2				6.00			김수미								김수미						
	150	-	4				1.15			김수미								김수미						
수용	149	-	1				14.19			조현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62 벽산아파 트 104-1001					121.38		조현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62 벽산아파 트 104-1001					
	149	-	2				10.62			조현래								조현래						
	149	-	4				0.19			조현래								조현래						
	150	-	1				11.07			조현래								조현래						
	150	-	2				11.83			조현래								조현래						

구분	연 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			이 용 상 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동 수	층수 (지하/ 지상)	연 면 적(㎡)			소 유 자		권리의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50	-	4																				
수용	72	149	-	1												165.64		양해운		압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149	-	2														양해운		근저당	효창새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6		
		149	-	4														양해운						
		150	-	1														양해운						
		150	-	2														양해운						
		150	-	4														양해운						
수용	73	151	-	1	대	86.00	86.00	86.00	대	제2층 일반 주거지역	홍준화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한가람A 207-702	주택	목조	1	1	36.23	36.23	홍준화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한가람A 207-702				
수용	74	151	-	2	대	72.70	72.70	72.70	대	제2층 일반 주거지역	김선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월봉백산(아) 202-902호	주택	목조	1	1	19.83	19.83	김선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월봉백산(아) 202-902호	근저당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효창동지점)	
수용	75	152	-	1	대	68.10	68.10	68.10	대	제2층 일반 주거지역	이학우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152-1	주택	세멘벽돌조	1	1	40.44	40.44	이학우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152-1				
수용	76	152	-	5	대	14.20	14.20	14.20	대	제2층 일반 주거지역	주봉길	서울 용산구 효창동 152-5	주택	스레트	1	1	29.00	29.00	주봉길	서울 용산구 효창동 152-5			무허가	
수용	77	152	-	7	대	52.20	52.20	52.20	대	제2층 일반 주거지역	박지현	서울 용산구 효창동 152-7	근생 및 주택	목조	1	2	69.41	69.41	박지현	서울 용산구 효창동 15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압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근저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독막길 24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중곡동지점)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m <sup>2</sup> )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예 수	층수 (지하/ 지상)	연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권리유 종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95	164	-	10	대	8.30	8.30	4.15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소래	서울 용산구 효창동 5-487					이소래	서울 용산구 효창동 5-487							
		164	-	10				4.15			안명희	서울 용산구 효창동 171-3					안명희	서울 용산구 효창동 171-3							
수용	96	164	-	11	대	35.40	35.40	35.4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김순금	서울 구로구 신 도림동 646 신 도림4차 이편 한세상 1110- 1102	근생	목조	1	1	29.75	29.75	김순금	서울 구로구 신 도림동 646 신 도림4차 이편 한세상 1110- 1102	근저당	영등포 동 농업협 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신길 동 197-2(문래동지 점)		
수용	97	164	-	14	대	5.20	5.20	5.2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한윤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47- 4 유천연립 2-305							한윤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47- 4 유천연립 2-305					
수용	98	165	-		대	31.20	31.20	31.2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박종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현 - @ 106 - 1801	주택	목조	1	1	31.07	31.07	박종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현 - @ 106 - 1801					
수용	99	171	-	1	대	133.20	133.20	133.2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지창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171-1	주택	목조 벽돌조	1	2	103.76	103.76	지창고	서울 용산구 효 창동 171-1	근저당	(주)국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 가 9-1(용산지점)		
수용	100	171	-	3	대	71.80	71.80	71.8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김종우	서울 용산구 효 창동 171-3	주택	목조	1	1	56.20	56.20	김종우	서울 용산구 효 창동 171-3					
수용	101	171	-	4	대	21.70	21.70	21.7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김신희	서울 용산구 효 창동 171-3-306 구전 산노인전 묘양원	주택	목조	1	1	18.51	18.51	김신희	서울 용산구 효 창동 171-3-306 구전 산노인전 묘양원	근저당	효창새마 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6		
																				근저당	효창새마 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6			
																				근저당	효창새마 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6			
수용	102	172	-	3	대	40.10	40.10	40.1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서울 용산구 효창동 172-3	주택	목조	1	2	63.63	63.63	양은주	서울 용산구 효창동 172-3	근저당	효창새마 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6		
		172	-	4	대	11.50	11.50	11.5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양은주		근저당	효창새마 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6		
		174	-	1	대	3.90	3.90	3.9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양은주		근저당	효창새마 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6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동 수	층수 (지하/지상)	연 면 적(㎡)		소 유 자		권리의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0.50			홍정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10,104동 1102호(마석역신도아파트)													
							2.60			장만능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45, 4층(남가좌동)													
	112	-	2	대	77.80	77.80	77.8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산구												구112-2 (137.80)에서 지구계분할		
	114	-	1	대	22.10	22.10	22.1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산구														
							2.70			김춘의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55길 3,301호(용문동, 온누리빌라)													
							0.60			류인덕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안길 29번길 25													
	120	-	1	대	108.10	108.10	108.1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산구														
	122	-	3	대	55.20	55.20	55.2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산구														
							2.00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6, 301(효창동, 강산빌딩)													
	125	-	1	대	67.10	67.10	67.1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산구														
							1.50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6, 301(효창동, 강산빌딩)													
	130	-	3	대	4.40	4.40	4.4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산구														

구분	연 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m <sup>2</sup> )			이용상 황	소 유 자		용도	구조	동 수	층수 (지 하/ 지상)	연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권리의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35	-	4	대	53.30	53.30	50.8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산구													
								2.50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호청제4구 지역 주택제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6, 301(효창동, 강산빌딩)												
		136	-	4	대	9.10	9.10	9.1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산구													
		137	-	4	대	9.90	9.90	9.9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산구													
		143	-	1	대	70.40	70.40	68.4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산구													
								2.00		구정원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30, 404동 607호													
		152	-	3	대	0.50	0.50	0.5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산구													
		160	-	5	대	68.40	68.40	65.8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산구													
								1.30		호청제4구 지역 주택제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6, 301(효창동, 강산빌딩)													
								1.30		이형갑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1-7(효창동)													
		163	-	3	대	91.50	91.50	84.4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산구													
								1.00		장기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평창강로 137													
								6.10		이형갑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1-7(효창동)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			이용상 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층 수 (지하/ 지상)	연 면 적(㎡)		소 유 자			권리의 류 종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74	-	3	대	11.50	11.50	11.5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산구											
수용	108	92	-	1	대	26.80	26.80	26.8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획 재정부											
		123	-	3	대	26.40	26.40	3.6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획 재정부										09.03.11소 유권일부이 전	
								22.80		효창제4구 역 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6, 301(효창동, 강산빌딩)											
		146	-	4	대	117.70	117.70	9.2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획 재정부										09.03.11 소유권일 부이전	
								108.50		효창제4구 역 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6, 301(효창동, 강산빌딩)											
		149	-	5	대	3.20	3.20	3.2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홍준화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한가 람A 207동 702호										
		150	-	3	대	5.30	5.30	5.3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옥주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160-2										
		152	-	2	대	10.00	10.00	10.0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획 재정부											
								0.40			김소연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3-1 (효창동)										
								0.40			김남경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3-1 (효창동)										
								0.40			김남우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3-1 (효창동)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m <sup>2</sup> )			이용상 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층수 (지하/ 지상)	연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0.40			김민정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3-1(효창동)													
	152	-	6	대		12.60	12.60	9.3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획재 정부									09.03.11 소유권일 부이전				
								0.70		효창제4구 역 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6, 301(효창동, 강산빌딩)													
								2.60		박지현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5-1(효창동)													
	164	-	5	대		2.00	2.00	2.0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획재 정부													
	164	-	8	대		55.20	55.20	15.9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획재 정부									09.03.11 소유권일 부이전				
								6.90		오만근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1-5(효창동)													
								32.40		효창제4구 역 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6, 301(효창동, 강산빌딩)													
	171	-	2	대		32.40	32.40	8.8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획재 정부									09.03.11 소유권일 부이전				
								23.60		효창제4구 역 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76, 301(효창동, 강산빌딩)													
	172	-	2	대		1.50	1.50	1.2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획재 정부									09.03.11 소유권일 부이전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			이용상 황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층 수	층수 (지하/ 지상)	연 면 적(㎡)			소 유 자		권리 의 종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0.30		효창제4구 역 주택재 개발 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 로 276, 301(효창 동, 강산빌딩)													
	172	-	5	대	8.30	8.30	1.0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획 재정부											09.03.11 소유권일 부이전	
							7.30		효창제4구 역 주택재 개발 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 로 276, 301(효창 동, 강산빌딩)												
	173	-	1	대	14.20	14.20	3.7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획 재정부											09.03.11 소유권일 부이전	
							10.50		효창제4구 역 주택재 개발 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 로 276, 301(효창 동, 강산빌딩)												
	171	-	5	대	0.90	0.90	0.2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획 재정부												
							0.70		효창제4구 역 주택재 개발 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 로 276, 301(효창 동, 강산빌딩)												
	199	-	3	대	76.70	76.70	74.8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획 재정부												
							1.90		효창제4구 역 주택재 개발 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 로 276, 301(효창 동, 강산빌딩)												
	95	-	1	대	32.70	32.70	32.7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기획 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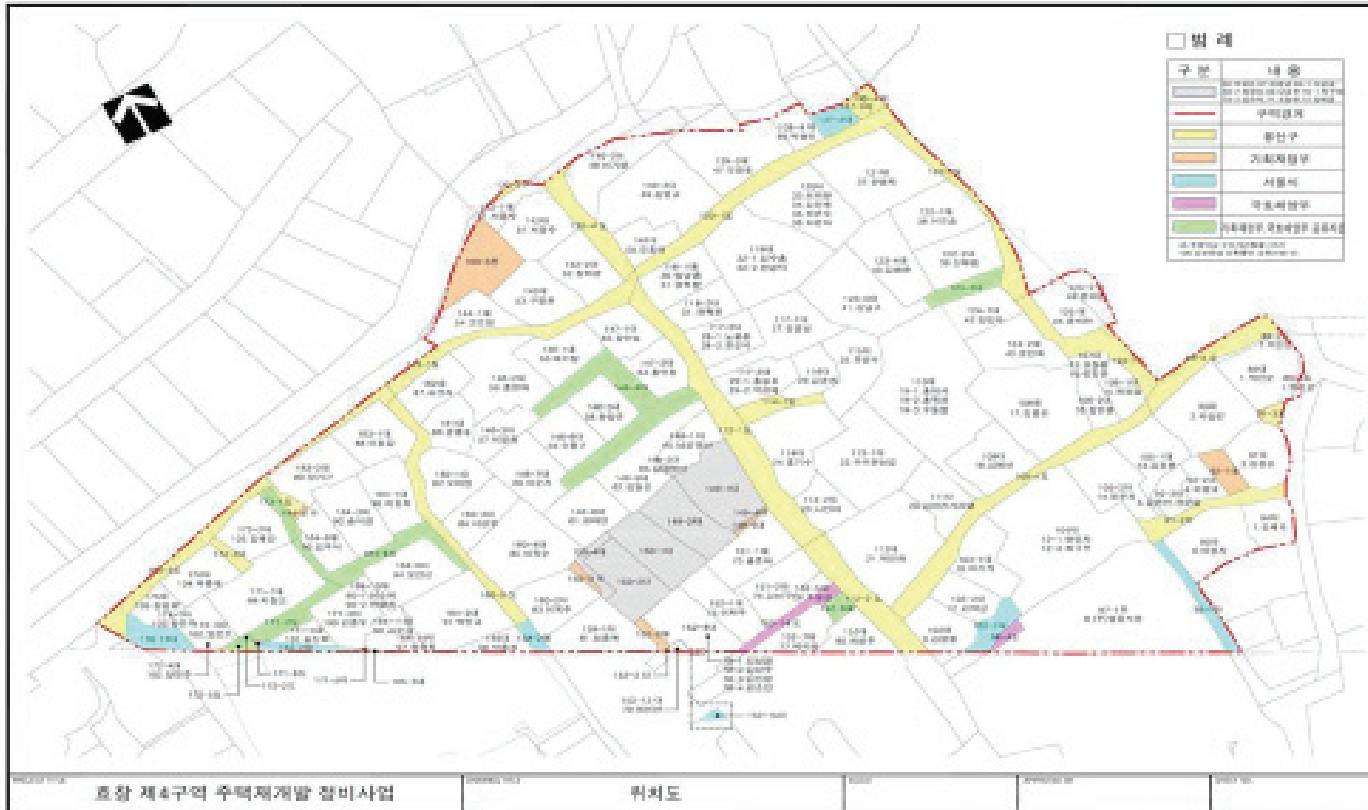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구조	동 수	층수 (지하/ 지상)	연 면 적(㎡)		소 유 자		권리의 종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전 체	소유자 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30																	
수용	110	98	-	4	대	8.30	8.30	8.3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효창제4구 역 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 로 276, 301(효창 동, 강산빌딩)												
		152	-	14	대	25.60	25.60	25.6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효창제4구 역 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 로 276, 301(효창 동, 강산빌딩)												
		171	-	8	대	1.00	1.00	1.00	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효창제4구 역 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시 용산구 백범 로 276, 301(효창 동, 강산빌딩)												

※ 첨부서류

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명기.

◎ 위치도



**공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4 - 755호

**건축허가 취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통지(미사용승인 건축물)」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용 산 구 청 장**

**1. 공고내용:** 건축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부처분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및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건축과(☎ 02-2199-7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규정:**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3. **공고대상**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주용도	공시송달사유
2013-건축과-신축허가-58	안○경	한남동 724-54	359.88	제2종근린생활시설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14. 10. 20. ~ 2014. 11. 4.(15일 이상)

5. **게시장소:** 구보(용산구청),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4 - 757호

## 공시송달 공고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하였으나(등기우편 송달),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용 산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4.10.21. ~ 2014.11. 4.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시는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공고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구(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구(건축과)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공고기간 내에 이의제기 또는 의견 미제출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4.10.21. ~ 2014.11. 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용산구청 건축과 [☎ 02)2199-749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방법** : 용산구청(구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5. **기타사항(관련규정)**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붙임 공고대상 1부

[붙임]

## 공시송달 공고대상

연번	대지위치	호수	소유자	주소	위반내용	부과예고 금액	송달결과
1	용문동 38-**	B01	권선국	용산구 한강대로 53길 ** (한강로2가)	사무소를 주택 으로 용도변경	875,060	폐문부재-반 송예정
2	용문동 38-**	B02	권선국	용산구 한강대로 53길 ** (한강로2가)	사무소를 주택 으로 용도변경	875,060	폐문부재-반 송예정
3	용산동2가 1-**	B01	김국진	용산구 신흥로 **, B01호 (용 산동2가)	사무소를 주택 으로 용도변경	1,760,480	폐문부재-반 송예정
4	청파동2가 42- **	203	김상철	경기동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 101동 1***호(풍동,에이스아파트)	사무소를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133,975	폐문부재
5	한강로3가 40-**외 1	202	김애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251번 길 **, 3**호(신흥동, 다세대주택)	사무소를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2,826,750	폐문부재-반 송예정
6	용산동2가 39-**	B01	김유경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59번 길 **,	사무소를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1,716,510	수취인부재
7	서계동32-*	206	김혜근	서초구 신반포로23길 **, ** 동 **호	사무소를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2,754,430	수취인부재
8	서계동 33-*	101	김홍준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 1층 (잠실동)	사무소를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2,113,510	폐문부재
9	서계동 33-*	B01	노창남 (49/100)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1길 **, 1동 **호	사무소를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1,183,000	폐문부재
10	청파동1가 89-**	304	도중현	서초구 마방로10길 **, A동 ***호	사무소를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1,885,350	폐문부재-반 송예정
11	한강로3가40-**	201	박영숙	용산구 한강대로 15길 **, **호	사무소를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2,826,750	폐문부재-반 송예정
12	서계동 33-**	102	박준영	용산구청파로73길**, 1층 동 **호	소매점을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2,328,610	폐문부재-반 송예정
13	서계동 252-**	202	박형근	경기도 안양시 매곡로 **, 에 이동 **호	사무소를 주택 으로 용도변경	1,242,240	수취인부재- 반송예정
14	청파동2가 10-**	B03	배용규	강서구 강서로**길 **	소매점을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1,973,350	폐문부재
15	남영동 93-**	103	이성식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청용길 **	일반음식점,소매점,사무 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417,840	폐문부재-반 송예정
16	청파동2가 10-**	201	이지선	부산시 부산진구 거제천로18 번길 **, **호	사무소를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4,119,450	폐문부재
17	용산동2가 15-**	B01	이학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 ** 동 **호	소매점을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2,029,180	수취인불명
18	서계동 33-*	401	임경남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 동 **호	사무소를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2,049,760	폐문부재
19	한강로2가 **	비02	임대호	강서구 양천로28길**, **동 **호	사무실을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3,070,000	이사불명
20	청파동1가 89-**	303	장연희	강동구 명일로 **, **동 **호	사무소를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1,885,350	폐문부재-반 송예정
21	청파동2가 10-**	101	장용준	은평구 연소로**길, A동 **호	소매점을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1,611,670	폐문부재
22	청파동1가 1-**	301	정영희	경기도 화성시 동탄나루 **, **동 **호	사무소를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750,190	수취인불명
23	청파동1가 6-*외1	203	정혜진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183번 길 **, **층	사무소를 주거용 으로 무단 용도변경	483,940	폐문부재-반 송예정

연번	대지위치	호수	소유자	주소	위반내용	부과예고 금액	송달결과
24	청과동1가 100-**	B01	조찬래	서대문구 통일로 **, 302동 **호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117,360	경비실에서 수령치 않아 재배달후 보관
25	용산동2가 5-**	B01	차충호	성북구 오패산로3길 **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891,560	수취인부재-반송예정
26	청과동1가 89-**	401	최나영	동대문구 망우로12라길 **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915,760	폐문부재
27	청과동1가 1-**	301	최정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나루 **, **동 **호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	750,190	수취인불명
28	한강로2가79-**	B103A	허성신	전북 부안군 부안읍 변영로 **	소매점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계단실 옆 확장)	2,414,020	폐문부재-반송예정
29	한강로2가 107-**	401	홍성분	관악구 문성로 205-8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	1,388,640	폐문부재
30	청과동1가 6-*	203	홍진철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183번길 **, *층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	322,640	폐문부재-반송예정
31	청과동1가 6-*	203	홍진호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83번길 **, *층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	322,640	폐문부재-반송예정
32	한강로3가 40-**외 1	101	황찬웅	서대문구 성산로24길 **, 1층 *호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	2,566,720	폐문부재-반송예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4 - 759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안 전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1. 개정취지

자치단체 조례 및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규정되었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제화 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조 부터 제12조)
- 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교부(안 제13조 부터 제18조)
- 다.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안 제25조)
- 라.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안 제27조)
- 마.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안 제2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참조: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용산구청 기획예산과

○ 전화 : 2199-6443, FAX : 2199-5540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34-87)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자치단체 조례 및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규정되었던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제화 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조 부터 제12조)
- 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교부(안 제13조 부터 제18조)
- 다.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안 제25조)
- 라.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안 제27조)
- 마.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안 제28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1)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시행 2014.11.2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

- 1)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23. ~ 11. 4.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중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2014. 10. (감사담당관)
- 4) 성별영향평가 : 2014. 10. (가정복지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단,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해당 보조금 관련 소관 국·소장 2인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민간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6조의 2(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사직을 희망하는 때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과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 최종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용도의 사용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7조의2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4 - 764호

## 공시송달공고

인천지방법원 2014타경59707호(자동차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민법제404조, 자동차등록령 제1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가 접수되어 양수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인한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제목 : 자동차임의경매를 위한 채권자대위 강제이전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14. 10. 24. ~ 2014. 11. 07.(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경매신청일	이전등록일	비고
46누1427 (SM5)	(주)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이성훈 이화순 이성수 이명순 이명자 이명숙	2014.09.03	2014.10.24	인천지방법원 2014타경59707

#### 4. 공시송달 내용

■ 자동차임의경매를 위한 채권자대위 신청이 접수되어 소유권이전등록 사실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고하오니,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에 방문하시어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책임보험가입, 자동차검사 등 소유권 이전등록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반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2199-7791,77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23.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인 사

## 인사발령(육아휴직) 사항 통보

아래와 같이 인사발령(육아휴직) 사항을 통보합니다.

## 【발령 제2014-101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김지영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휴 직을 명함 (2014.10.18~2015.10.17)	보건지도과	지방간호 서기
[발령일자 : 2014. 10. 18.字]				

## 인사발령(근속승진) 사항 통보

아래와 같이 인사발령(근속승진) 사항을 통보합니다.

### 【발령 제2014-102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강수진	지방사무운영주사보에 임함	한남동	지방사무운영 서기
[발령일자 : 2014. 10. 20.字]				

## 인사발령(보직변경) 사항 통보

아래와 같이 인사발령(보직변경) 사항을 통보합니다.

### 【발령 제2014-103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김삼식	건축지도팀장	건축과	지방시설주사 (건축)
2	최인수	공공건축팀장	건축과	지방시설주사 (건축)

[발령일자 : 2014. 10. 21.字]

## 인사발령(복직) 사항 통보

아래와 같이 인사발령(복직) 사항을 통보합니다.

### 【발령 제2014-104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오혜성	복직을 명함	서빙고동	지방행정 주사보
[발령일자 : 2014. 10. 21.字]				